

WHOIS 도메인 등록인의 개인정보 보호

2019. 7. 5.

신용우
(국회입법조사처)

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

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시행되고 있으며
개인정보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임

- 2018년 11월 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됨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안 (인재근 의원 대표발의)
 -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(노웅래 의원 대표발의)
 - 「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(노웅래 의원 대표발의)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(김병욱 의원 대표발의)
- 정보주체 동의 기반의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
 - 가명처리 도입 :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한 경우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
 - 동의 요건 완화 :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
 - 개인정보 개념 정비 :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'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'을 기준으로 제시
 - 법제 정비 및 추진체계 일원화

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

목적 조항, 최소 수집 조항 등이 이슈가 될 수 있음

- 국내 법제의 현행 개인정보 처리 목적 조항은 GDPR 보다 엄격한 편임
 - 현행 법률상에는 GDPR과 같은 '양립 가능'에 관한 조항이 미비함
 - 개정안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 - GDPR 수준으로 목적 조항을 개선하되, 향후 ICANN의 목적 요건 수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
- 국내 법제의 경우 단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위반시 제재가 미비함
 -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'개인정보의 수집 제한'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, 정보주체가 미동의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음
 - GDPR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



인터넷주소법

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

- 「인터넷주소법」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「정보통신망법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
 - 「인터넷주소법」 제15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
 - 현행과 같은 도메인 등록인 개인정보 공개는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
- 추후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경우 개인정보 공개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함
 - 개인정보 요청권자의 범위(요건) 및 절차 등에 관하여 「인터넷주소법」 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상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
 - 법집행, 지재권침해 모니터링, 사이버보안 등 목적의 경우 접근이 필요
 - 통계·학술연구 목적의 경우 접근이 필요한지, 가명처리 등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
 -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인가권자에 포함될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
 -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검토가 필요함
 - 분쟁조정 관련 「정보통신망법」상 임시조치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참고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열람권으로서 조회 사실에 관한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
 - ICANN의 인가프로그램 및 계층적 접근 모델의 구체화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
감사합니다